

● 제32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1032)
검 토 보 고 서

2023. 9. 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남창진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1032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남창진 의원(찬성 60명)
- 나. 제안일 : 2023. 8. 14.
- 다. 회부일 : 2023. 8. 2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의료시술을 통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다태아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시장이 다태아(多胎兒)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·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

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. (안 제4조의6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모자보건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.

다. 입법예고(2023.8.24.~8.28.) 결과 : 의견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 등 의료기술을 통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이 다태아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 (안 제4조의6)

- 개정안은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4¹⁾에서 ‘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(多胎兒)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·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’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임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4조의6(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다태아(多胎兒)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·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)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4(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
- 통계청²⁾에 따르면 출산인구가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총 출생아 중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, 서울특별시 내 전체 신생아 중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4.4%에서 2021년 5.4%로 상승하였음³⁾.

<서울특별시 내 다태아 출생수>

(단위 : 명)

구분	2017	2018	2019	2020	2021
총출생아수	65,389	58,074	53,673	47,445	45,531
다 태 아	2,898	2,699	2,706	2,574	2,452
구성비(%)	4.4	4.6	5.0	5.4	5.4

- 또한 신생아 임신기간을 비교해보면 단태아의 경우 37~41주가 94%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다태아의 경우 37주 미만의 조기분만 비중이 66.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체중은 단태아의 경우 93.3%가 정상체중(2.5~4.0kg미만)인 반면 다태아의 경우 절반 이상인 59.9%가 저체중(2.5kg미만)임.

<신생아 체중과 임신기간 비교(2021년 기준)>

(단위 : %)

구분	체중		임신기간	
	정상체중 (2.5~4.0kg미만)	저체중 (2.5kg미만)	37주~41주	37주 미만
단태아	93.3%	4.2%	94%	5.9%
다태아	40.1%	58.7%	33.3%	66.6%

다태아(多胎兒)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·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5. 12. 22.]

2) 통계청, 2021년 출생 통계

3) 통계청, 인구동향조사

- 다태아의 경우 조산과 저체중 발생빈도가 높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문제로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출산 및 양육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해 보임.
-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태아 비중을 고려할 때 시장의 다태아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 하겠음.
- 집행기관에서도 다태아는 단태아에 비해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높아 산모와 다태아는 좀 더 특별하게 건강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.
- 한편 지난 7월 27일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「난임·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」을 발표하였음.
 -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다태아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시 국가사업과의 유사·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「모자보건법」제10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써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또한 다태아의 경우 단태아에 비해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높아 산모 및 다태아는 건강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

이 다태아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해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
- 단, 보건복지부에서도 난임·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(안)을 발표한 바, 향후 집행기관은 다태아 임신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유사·중복을 최소화하며 서울특별시 차원의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·시행이 필요해 보임.